

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0. 7.11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0년 6월 19일 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2000년 7월 11일 (제176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일영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(대통령령제16730호, 2000.2.28)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근거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는 대신 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임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동윤)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(대통령령 제16730호,2000.2.28)에 교육감이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존치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(조례 제207호, 1964.

11. 25)는 이를 폐지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